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□ 2005년 6월 30일 장준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애인복지법 (제11조의2)에 규정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(안 제2조),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(충청북도지사)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, 임기는 3년으로 하며(안 제3조, 안 제4조),

-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·운영하되, 정기 회의는 년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(안 제6조),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(안 제7조),
-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(안 제8조),
-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제척규정을 두는 것(안 제11조) 등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,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장애인복지위원 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- 다만, 의원발의된 조례안임을 감안할 때, 기능 및 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